

집속탄금지협약 1차 당사국 회의 참가 보고회



• 당사국 회의 전체 개괄 (염창근)	1
• 당사국 회의 내용 보고 (문명진)	11
• 한국 상황 및 운동 모색 (여옥)	16
• 집속탄금지협약 전문	18

2010년 12월 7일 화요일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The First Meeting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Vientiane, Lao PDR

9-12 November 2010

1. 1차 당사국 회의 개괄

(1) 모토

- 당사국 회의 공식 모토
No Cluster Munitions : From Vision To Action
- 당사국 회의 CMC 모토
GET ON BOARD

(2) 일정

- 당사국 회의 공식 일정 : 11월 9일~12일 (4일간)
- 당사국 회의 부대 행사 : 11월 7일~12일 (6일간)
- 당사국 회의 CMC 일정 : 11월 6일~13일 (8일간)
- 회의 장소 : 라오스 비엔티안 돈찬궁 호텔 등

(3) 의장국 및 의장국의 친구국가

- 의장국
라오스 (의장 : 통룬 시슬릿 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 친구국가 (12개국, 영역별)
 - 노르웨이 _ 비엔티안 액션 플랜
 - 캐나다 _ 2011년 워크 플랜
 - 벨기에 _ 보고서 양식
 - 아일랜드 _ 진행 절차 관련
 - 일본 _ 협약의 보편화
 -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_ 피해자 지원
 - 독일 _ 비축분 폐기
 - 호주, 슬로베니아 _ 오염 정화
 - 남아프리카 _ 국제 협력과 지원
 - 뉴질랜드 _ 국가별 이행 평가

(4) 참여국 (서명 및 비준한 나라는 현재 108개)

• 당사국(비준국) 46개국 중 40개 (*현재 비준국은 48개국)

Albania(알바니아), Antigua and Barbuda(앤티가바부다), Austria(오스트리아), Belgium(벨기에), Bosnia and Herzegovina(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Burkina Faso(부르키나파소), Burundi(부룬디), Croatia(크로아티아), Comoros(코모로), Denmark(덴마크), Ecuador(에콰도르), Fiji(피지), France(프랑스), Germany(독일), Guatemala(과테말라), Holy See(바티칸 시국), Ireland(아일랜드), Japan(일본), Lao PDR(라오스), Lebanon(레바논), Lesotho(레소토), Luxembourg(룩셈부르크), Macedonia FYR(마케도니아), Malawi(말라위), Mali(말리), Mexico(멕시코), Moldova(몰도바), Monaco(모나코), Montenegro(몬테네그로), New Zealand(뉴질랜드), Nicaragua(니카라과), Niger(니제르), Norway(노르웨이), Seychelles(세이셸), Sierra Leone(시에라리온), Slovenia(슬로베니아), Spain(스페인), United Kingdom(영국), Uruguay(우루과이), Zambia(잠비아)

• 서명국(비비준) 62개국 중 47개

Afghanistan(아프가니스탄), Angola(앙골라), Australia(호주), Benin(베냉), Botswana(보츠와나), Bulgaria(불가리아), Cameroon(카메룬), Canada(캐나다), Central African Republic(중앙아프리카공화국), Chad(차드), Chile(칠레), Colombia(콜롬비아), Republic of Congo(콩고공화국), Costa Rica(코스타리카), Cote d'Ivoire(코트디부아르), Czech Republic(체코공화국), DR Congo(콩고), Djibouti(지부티), El Salvador(엘살바도르), Gambia(감비아), Ghana(가나), Guinea(기니), Guinea-Bissau(기니비사우), Indonesia(인도네시아), Iraq(이라크), Italy(이탈리아), Kenya(케냐), Liberia(라이베리아), Madagascar(마다가스카르), Mauritania(모리타니), Mozambique(모잠비크), Namibia(나미비아), Netherlands(네덜란드), Nigeria(나이지리아), Palau(팔라우), Paraguay(파라과이), Peru(페루), Philippines(필리핀), Portugal(포르투갈), Sao Tome and Principe(상투메프린시페), Senegal(세네갈), South Africa(남아프리카), Sweden(스웨덴), Switzerland(스위스), Tanzania(탄자니아), Togo(토고), Uganda(우간다)

• 비서명국 34개국

Argentina(아르헨티나), Bangladesh(방글라데시), Brunei Darussalam(브루나이), Burma(버마), Cambodia(캄보디아), China(중국), Eritrea(에리트레아), Finland(핀란드), Jordan(요르단), Kuwait(쿠웨이트), Libya(리비아), Malaysia(말레이시아), Maldives(몰디브), Mauritius(모리셔스), Mongolia(몽골), Morocco(모로코), Palestine(팔레스타인), Poland(폴란드), Qatar(카타르), Russian Federation(러시아), Saudi Arabia(사우디아라비아), Singapore(싱가포르), Solomon Islands(솔로몬제도), Sudan(수단), Swaziland(스와질란드), Tajikistan(타지키스탄), Thailand(태국), Timor Leste(동티모르), Trinidad and Tobago(트리니다드토바고), Turkey(터키), Ukraine(우크라이나), Vietnam(베트남), Zimbabwe(짐바브웨)

• 정부 대표부 인원 : 500여명

(5) 참여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

• CMC 소속 시민사회 NGO 및 생존자 : 400여명

• ICRC(국제적십자) 등 국제기구 : 100여명

2. 전체 일정

(1) 미디어 필드 트립 및 현장 방문 Field trip or visits

- 미디어 필드 트립 : 공식 일정 전 1주일간
- 현장 방문 : 11월 7, 8, 10일 2차례씩

(2) 등록 : 11월 7일~

(3) 1차 당사국 회의 개최식

- 11월 9일 오전 9시, Cultural Hall
- 입장 : 라오스 전통 무용수들의 공연 및 라오스 사람들의 환영 행렬
- 오프닝 영상 : Vision into Action
- 기조연설 1 : 샤야손 촘말리(Choummaly SAYASONE) 라오스 대통령
- 기조연설 2 : 아샤로즈 미기로(Asha-Rose Migiro) 유엔 사무부총장
- 기조연설 3 : 톰미 실람판(Thoumy Silamphan) 생존자 대표
- 라오스 무용 공연 : 집속탄 피해
- 라오스 노래 공연 : Goodbye Bombie

(4) 공식 일정

• 당사국 회의

<9일>

날짜	시간	진행
9일 (화)	11:00 ~ 13:00 본회의	• 개회 - 준비회의에서 제안된 회의 절차 채택 및 의장 선출 (아일랜드) - 의장의 회의 진행 계획에 대한 연설
		• 회의 절차 논의 - 본 회의의 아젠다, 활동 프로그램, 절차의 규칙 채택 (의장) - 결과문들(outcome documents) 초안 소개 (의장) - 친구국가의 관련 연설 : 비엔티안 선언(라오스), 비엔티안 액션 플랜(노르웨이), 투명성 보고 양식(벨기에), 2011년 활동 프로그램(캐나다)
		• 일반 의견 발표 - 개회 초청 연설 (UN, ICRC, CMC)
	13:00 ~ 15:00 부대행사	
	15:00 ~ 18:00 본회의	• 일반 의견 발표 (이어서) - 국가별 약속, 협약 확산, 협약 이행 계획, 1차 당사국 회의에 대한 기대 등
18:30 ~ 20:30 라오스 정부의 리셉션		

<10일>

날짜	시간	진행
10일 (수)	9:00 ~ 12:00 본회의	· 일반 의견 발표 (이어서) - 국가별 약속, 협약 확산, 협약 이행 계획, 1차 당사국 회의에 대한 기대 등
	12:00 ~ 14:00 부대행사	
	14:00 ~ 17:00 본회의	· 협약의 지위와 활동 (1) 보편화 활동 (일본 기조 연설 이후 각국 발표) : 협약 전문 (2) 비축분 폐기 활동 (독일 기조 연설 이후 각국 발표) : 제3조 (3) 오염 정화와 위험 교육 활동 (호주 기조 연설 이후 각국 발표) : 제4조
	18:00 ~ 22:00 부대행사	

<11일>

날짜	시간	진행
11일 (목)	9:00 ~ 12:00 본회의	· 협약의 지위와 활동 (이어서) (4) 집속단 잔존물 제거를 위한 기술적 발전 (5) 피해자 지원 (오스트리아 기조 연설 이후 각국 발표) : 제5조 (6) 투명성 보고 (벨기에 기조 연설 이후 각국 발표) : 제7조
	12:00 ~ 14:00 부대행사	
	14:00 ~ 17:00 본회의	· 협약의 지위와 활동 (이어서) (7) 국가별 이행 조치 (뉴질랜드 기조 연설 이후 각국 발표) : 제9조 (8) 2011년 활동 계획 (캐나다 기조 연설 이후 각국 발표) (9) 국제협력과 지원 (남아프리카 기조 연설 이후 각국 발표) : 제6조
	18:00 ~ 22:00 부대행사	

<12일>

날짜	시간	진행
11일 (목)	9:00 ~ 12:00 본회의	(7) 국가별 이행 조치 (뉴질랜드 기조 연설 이후 각국 발표) : 제9조 (8) 2011년 활동 계획 (캐나다 기조 연설 이후 각국 발표) (9) 국제협력과 지원 (남아프리카 기조 연설 이후 각국 발표) : 제6조
	12:00 ~ 14:00 부대행사	
	14:00 ~ 17:00 본회의	· 최종 문서 검토와 채택 · 폐회식 - 비엔티안 선언 발표, 비엔티안 액션 플랜 발표, 비엔티안 청년 선언 발표, 생존자 선언 발표
	18:00 ~ 22:00 부대행사	

· 부대행사

<7일>

- 의장 초청 친구들 회의 (라오스 외교부, 15:00~17:00)

- 현장 방문 (오전/오후)

<8일>

- 현장 방문 (오전/오후)
- 미술 작품 전시회 및 도서 출판 기념회 (핸디캡인터내셔널 주최, Cultural Hall, 19시)
: 핸디캡인터내셔널과 라오스 미술작가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작품 전시회 겸 작품 수록 도서 출판기념회.

<9일>

- 오프닝 기자회견 (돈찬궁 호텔, 10시 30분)
- 각국 대표부 대사와의 점심 (유엔 주최, 노보텔, 13시)
- 대인지뢰와 집속탄 모니터 브리핑 (ICBL-CMC 주최, 돈찬궁 기자회견실, 13시)
- 불발탄에 관한 젠더적 관점 (CMC·유엔 주최, 돈찬궁, 13시)
- 집속탄금지협약 관련 도전 활동 (GICHD 주최, 돈찬궁 사이드이벤트룸2, 13시)
- 라오스 정부의 환영 리셉션 (라오스 정부 주최, 정부 청사, 19시)
- 불발탄 관련 영화 상영 (프랑스 언어센터 주최, 프랑스 언어센터, 19시)

<10일>

- 집속탄금지협약 해설 (국제법과 정책 연구소 주최, 돈찬궁 기자회견실, 12시)
- 폭탄 속에서 농사짓기 : 라오스에서의 오염 정화의 역사 (메노나이트 주최, 돈찬궁 사이드이벤트룸1, 12시)
- 피해자 지원 (핸디캡인터내셔널 주최, 돈찬궁 사이드 이벤트룸2, 12시)
- EU의 라오스에서의 협력 활동과 불발탄 제거 활동 (EU 주최, 돈찬궁 사이드이벤트룸3, 12시)
- 집속탄에 대한 현재적 접근 (노르웨이 피플 에이드 주최, 돈찬궁 독참파룸, 13시)
- 리셉션 및 휠체어 농구 경기 (호주정부·COPE·CMC 주최, COPE, 17시 30분)

<11일>

- 집속탄금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장기 프로그램 (라오스 UXO NRA 주최, 돈찬궁 기자회견실, 12시)
- 무기거래조약(ATT)를 향해 (옥스팜 주최, 돈찬궁 사이드이벤트룸1, 12시)
- 비축분 폐기 (몰도바 정부 주최, 돈찬궁 사이드이벤트룸2, 12시)
- 집속탄금지협약 이행에 관한 독일 NGO의 사례 (SODI 주최, 돈찬궁 사이드이벤트룸3, 12시)
- 집속탄금지협약에 관한 강력한 해석 (휴먼라이츠와치 주최, 돈찬궁 독참파룸, 12시)
- 리셉션 : 시민사회의 노력을 치하하는 오스트리아 정부 초청 (돈찬궁 옥상 정원, 18시)
- 리셉션 : MAG 사진책 출판기념 (노보텔, 18시 30분)
- 리셉션 (프랑스 공관, 17시 30분)
- 불발탄 관련 영화 상영 (프랑스 언어센터 주최, 프랑스 언어센터, 19시)

<12일>

- 피해자들의 목소리 (핸디캡인터내셔널 주최, 돈찬궁 기자회견실, 12시)
- 집속탄금지협약과 대인지뢰금지협약 관련 미국 정책 업데이트 (미국대인지뢰금지연합 주최, 돈찬궁 사이드 이벤트룸2, 12시)
- 인도주의 군축을 위한 다음 단계 (AOAV·SEHLAC·CEDAC 주최, 돈찬궁 사이드이벤트룸3, 12시)
- NGO의 역할 (AAR·월드에듀케이션 주최, 돈찬궁 독참파룸, 12시)

- 중동과 북아프리카와 짐속탄금지협약 (돈찬궁 사이드이벤트룸3, 12시)
- 폐회 기자회견 (돈찬궁 기자회견실, 17시)

• 부스 행사

- AAR JAPAN : 피해자 지원, 위험 교육 프로그램 전시
- NCBL : 네팔에서의 대인지뢰 캠페인 활동 전시
- CMC : 사진 및 메시지 전시
- COPE : 피해자 지원 및 재활 지원 전시
- COPE · CMC : 불발탄으로 만든 배 전시
- 핸디캡 인터내셔널 : 활동 내용 전시
- 핸디캡 인터내셔널 라오스 : 불발탄 제거 활동 사진 전시
- Helvetas : 짐속탄으로 만든 팔찌, 스푼 등 전시 및 판매
- 라오스 장애인협회 : 관련 정보 제공
- 라오스 장애인협회 : 프로그램 결과물 전시
- 라오스 여성장애인개발센터 : 관련 정보 제공
- 전쟁의 유산 : 관련 정보 제공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물품 판매
- MAG :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진 전시
- 노르웨이 교회 에이드 · 라오스 절 : 관련 정보 제공
- NPA : 활동 사진, 영상 등 전시
- 세이브더칠드런 노르웨이 : 라오스에서의 활동 내용 정보 제공
- SODI : 사진 전시, 슬라이드 등
- 월드에듀케이션 : 정보 제공
- 월드비전 라오스 : 정보 제공
- * 그외 각 NGO별 라오스 사무실에서의 전시

(5) 그외 CMC 일정

• CMC 일정

<6일>

- 8시 15분 : 1차 당사국 회의 조직팀 아침 회의 (살라나 호텔)
- 10시 30분 ~ : 활동가 사진 촬영 (드로제 호텔)
- 12시 30분 : 조정위원회 점심 회의 (프랑스 센터)
- 14시 30분 : 활동가 오리엔테이션 (프랑스 센터)
- 18시 30분 : 환영 파티

<7일>

- 9시 : 모니터 편집팀 회의 (돈찬궁 호텔)
- 10시 : 모니터 검토 네트워크 회의 (돈찬궁 호텔)
- 10시 : 명상 (속팔팡 절)

- 13시 : CMC-ICBL 공동 회의 (돈찬궁 호텔)
- 14시 30분 : 명상 (속팔랑 절)
- 16시 : 로비 활동 관련 회의 (돈찬궁 호텔)
- 17시 15분 : 옥스팜 필름 상영 (돈찬궁 호텔)
- 18시 : 핸디캡인터내셔널 초청 만찬 (레바네톤 카페)

<8일>

- 8시 : 전쟁의 유산 전시회 (돈찬궁 호텔)
- 9시 ~ : 피해자 지원 관련 워크숍 (돈찬궁 호텔)
- 9시 ~ : 당사국 회의 각종 전시회 (돈찬궁 호텔)
- 9시 : 사진 기술 워크숍 (돈찬궁 호텔)
- 10시 : 무기 이해 101 (돈찬궁 호텔)
- 13시 : 캠페인 전략 구상하기 (돈찬궁 호텔)
- 13시 : 폭탄 속에서 농사짓기 (돈찬궁 호텔)

<10일>

- 7시 45분 : CMC 후원인 아침식사 (돈찬궁 호텔)
- 8시 : 아침 브리핑 (돈찬궁 호텔)

<11일>

- 8시 : 아침 브리핑 (돈찬궁 호텔)

<12일>

- 8시 : 아침 브리핑 (돈찬궁 호텔)
- 17시 30분 : 대표부들과의 회의 (돈찬궁 호텔)
- 19시 30분 : 디너 파티 (원앤온리 레스토랑, TBC)

<13일>

- 12시 30분 : 보고회 (프랑스 언어센터)

• 당사국 회의에서의 CMC 연설

- 개회식 : 생존자 대표 연설
- 개회 초청 연설
- CCW 일반 지위 관련 연설
- 보편화 관련 연설
- 비축분 폐기 관련 연설
- 오염 정화 및 위험 교육 관련 연설
- 오염 정화 기술 관련 연설
- 피해자 지원 관련 연설
- 투명성 조치 관련 연설
- 국가별 이행 조치 관련 연설

- 2011년 활동 계획 관련 연설
- 국제 협력과 지원 관련 연설
- 협약 준수·분쟁 관련 연설
- 보유 보고와 비축분·폐기 연장 요구 관련 연설

3. 1차 당사국 회의 라오스 주치의 의미

라오스가 집속탄금지협약의 역사적인 첫 당사국 회의를 주최했다. 이번 회의는 집속탄금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첫 번째 회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집속탄 피해국이자 생존국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지못 크다.

회의는 각국 정부 대표부와 세계의 시민사회 활동가와 생존자 1000여 명이 함께 의지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 집속탄 금지를 향한 세계적 차원의 공식 회의가 성사된 것이다.

라오스는 집속탄 최대 피해국이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집속탄을 사용하기는커녕 생산하지도 비축하지도 않았다. 오직 미국이 라오스 산천에 뿌린 집속탄을 경험했을 뿐이었다. 그 피해는 4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너무 크게 남아 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벌어진 전쟁 동안 미국은 200만 개 이상의 집속탄을 B-52 전폭기로 투하했고 이 집속탄들에 들어있던 2억6000만 개가 넘는 소폭탄이 국토 전역에 흩어졌다. 이는 220만 톤(2차 세계대전 전 기간에 투하된 폭탄의 전체량)을 넘어서는 규모였다.

그리고 이 소폭탄의 30%인 약 8100만 개가 불발탄으로 라오스 땅에 심어졌다. 역사상 최악의 무기 오염이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불발탄들은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으면 터지는데 이렇게 불발탄에 의한 사망자가 지금까지 5만 명이 넘는다. 3만28명은 전쟁의 와중에 발생했으며, 2만8명은 전쟁 종료 이후인 1974년부터 2008년 사이에 발생했다.

라오스 정부의 관련 기관인 'NRA'는 라오스 전체 17개 지역 중 10개 지역이 심각히 오염되어 있으며 전체 마을의 1/4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02년의 조사에서 라오스 농토 중 236km²가 불발탄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불발탄으로 남아 있는 집속탄 제거 노력이 계속되고 위험 교육이 라오스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 해 300명 이상이 불발탄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조차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에 한정된 것이므로 실제로는 그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는 1인당 면적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집속탄의 피해가 큰 곳이다. 고통의 범위에서도 단연 세계 최고라고 규정됐다. 불발탄은 농토, 학교, 운동장, 둔덕, 강, 길, 집 등 곳곳에 숨겨져 있다.

불발한 집속탄은 상시적인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땅으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이미 가난 속에 살아가는 농촌 주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경작할 농토에 묻혀 있는 불발탄이 언제 터질지 알 수가 없다.

또한 불발 집속탄을 제거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열악한 라오스 국가 경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집속탄으로 오염된 경작지, 학교, 마을에서만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데에도 최소 16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2009년까지 4만499개의 불발탄이 제거되었지만 이는 전체 불발탄 양의 0.05%에 불과하다. 면적으로 봐도 오염 지역의 1%만 제거작업이 종료됐을 뿐이다.

이처럼 라오스에는 대표적 비인도무기인 집속탄이 지천에 깔려 있다. 수많은 산골의 마을들은 집속탄에서 흩뿌

려진 불발탄과 더불어 살아간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무기와 함께하는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오스 사람들은 집속탄 껍데기를 집 기둥으로 쓰고 배로 만들어 타고 다닌다. 버려진 집속탄은 화분과 상자텃밭이 되기도 한다. 소폭탄 탄피는 호롱불이 되기도 하고 장난감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집속탄은 라오스 사람들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이것이 아직 터지지 않은 불발탄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집속탄은 삶을 앗아가는 장본인이 된다. 땅에서 농사를 짓고 강에서 고기를 잡아 살아가는 대부분의 농촌 마을 라오스 사람들에게 집속탄 불발탄은 그야말로 재앙이다. 쟁기질을 하다가 땅속에서 갑작스럽게 폭탄이 터진다.

미국은 라오스를 폭격할 때는 하루 300만 달러(당시로 환원하면 1700만 달러)의 돈을 폭격을 위해 썼지만 지금 라오스에 원조하는 돈은 1년에 고작 300만 달러이다. 미 공군이 베트남에 뿌리다 남은 폭탄을 라오스 산천에 뿌리고 왔다는 당시의 공군 조종사들의 증언도 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국제기구들이 라오스에서의 불발탄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1990년대에 들어서야 국제적 차원의 지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겨우 라오스의 몇몇 마을에 집속탄 위험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많이 부족했고 사상자는 계속 발생했다. 라오스 정부는 자신의 힘으로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더 많은 원조를 요청하는 일밖에 없었다.

라오스의 경제에 대해 말할 때면 언제나 라오스는 세계 최빈국에 무능할 뿐만 아니라 국제 원조에 기대기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과연 그것을 라오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전쟁 이후 라오스는 사회주의를 택했다. 그것은 미국과 태국의 경제 제재라는 가혹한 결과를 불러왔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들어서야 제재가 해제되었다. 긴 시간 동안 발전은커녕 내륙에 갇힌 채 힘겹게 살아갔던 것이다.

대다수의 라오스 사람들이 농민이라는 점, 그리고 그 땅에 불발탄이 널려 있다는 점은 농업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상존했음을 말해 준다. 라오스는 한번도 집속탄을 가진 적도 사용한 적도 없는데도 집속탄 때문에 마음껏 농사조차 짓지 못했다.

오랜 기간 이런 사실은 무시되어 왔다. 1990년대 들어 대인지뢰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생겨나면서 평화를 향한 국제 시민사회의 노력에 의해 라오스에 묻힌 집속탄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때서야 희생자와 피해자가 보였고 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라오스는 분명 원조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조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오스의 어려움은 라오스 스스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대규모 폭격과 경제제재, 불발탄으로 생겨났던 것이다. 라오스는 여전히 전쟁 속에 있다. 따라서 그 책임은 최소한 가해자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집속탄의 불발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서 삶을 빼앗아 갔으며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신들 땅의 자원을 이용할 수 없는 나라에게 경제발전은 환상일 것이다. 라오스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원조이라도 기대는 것이다. 원조를 받아서라도 불발탄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건 국가로서 당연하다. 따라서 집속탄 피해국에게 원조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집속탄 폭격의 부작용은 끔찍할 뿐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지속됐다. 대책이 지금과 같은 수준에 머문다면 앞으로 20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라오스는 회의에서 더 많은 원조를 요청했다.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이다. 농업 외에는 이렇다 할 산업이 없고 농민이 절대 다수인 나라에서 땅은 생존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라오스 사람들의 삶은 그 땅과 분리할 수 없이 이어져 있다. 그 땅에 폭탄이 심어져 파괴되어 있다는 사실은 라오스 사람들의 삶에도 폭탄이 심어져 파괴돼 있는 것과 같다.

라오스는 2008년 12월 3일 집속탄금지협약이 채택되던 오슬로 회의 당일에 협약에 서명했고 세계에서 5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비준까지 끝냈다. 라오스 입장에서는 이 협약이 미래를 위한 길의 하나라고 여기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첫 번째 당사국 회의를 국가적 차원에서 주최하며 원조를 더욱 강하게 요청했다. 많은 국가들이 이에 호응했다. 라오스처럼 심각한 집속탄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원조하기 위한 기금을 기탁하고 일본 등 지금까지 라오스를 원조했던 나라들도 올해부터 원조량을 더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라오스가 주최한 1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집속탄 문제가 명확히 규정됐다. 이 회의에서 전 세계 각국 정부 대표들은 집속탄을 더이상 용인할 여지가 없다는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집속탄금지협약의 실행과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짰다. 이미 스페인, 노르웨이, 벨기에 등 8개 국가가 집속탄 보유분을 전부 폐기했으며 더 많은 나라가 구체적인 폐기 일정을 약속했다.

알바니아, 잠비아 등은 자국 내 집속탄 오염지역 정화를 끝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집속탄 제거를 위해 더 많은 재정 지원을 공식 문서로 약속했다. 라오스 정부가 초안을 마련한 '비엔티안 선언과 행동 계획은 더 빠른 불발탄 제거, 오염지역 정화, 희생자 지원 등에 관한 일정표를 보여준다. 유엔은 이 모든 과정에 전체적인 지원을 서약했다. 유엔은 새천년 개발 목표의 하나로 불발탄 제거를 등록시켰다.

집속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회의를 공식 참관한 30여 개의 국가 대표부들도 집속탄 피해 마을 현장을 방문한 후 "집속탄이 지속적으로 이 땅의 순수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협약의 정신을 존중하며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검토하겠다"고 동조했다.

라오스는 실제로는 자국 내 불발탄 제거의 후원을 받기 위한 일환에서 첫 당사국 회의를 주최했다. 그러나 라오스가 회의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비단 자국만을 위한 일은 아니었다. 8세 때 집속탄 사고로 왼팔을 잃은 톰미 실람판 씨가 희생자 대표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 것처럼 집속탄 대책은 이미 국가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집속탄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불발 집속탄으로 야기되는 희생을 종식시키기 위한 작업의 속도를 높여 라오스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집속탄으로 피해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집속탄금지협약은 각 국가와 유엔, 국제기구, 시민사회, 생존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런 비극을 없애자는 미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기초다. 각 국가가 성실히 협약의 의무사항들을 이행하고 아직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이 참여한다면 약속은 미래를 향한 중요한 전진의 사례가 될 것이다.

4. CMC 2011년 활동 스케줄

- 3월 1일 : MBT 12주년
- 8월 1일 : 협약 발효 1주년 기념
- 9월 12-16일 : CCM 2차 당사국 회의 (레비논 베이루트)
- 10월 : 66차 유엔 군축국 회의
- 11월 14-25일 : CCW 4차 평가회의
- 11월 28일 ~ 12월 2일 : MBT 11차 당사국 회의 (캄보디아 프놈펜)

당사국 회의 내용 보고

1. 회의 결과

이번 회의를 통해 네 가지 공식문서가 도출되었다.

- 비엔티안 행동 계획 : 협약의 의무들을 이행하기 위한 66가지의 구체적인 전략이 담겨있음
- 비엔티안 선언 : “모든 국가들은 이제 이 협약에서 도출된 새로운 기준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집속탄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입장은 계속해서 변화해 갈 것이다”라고 선언
- 2011년 계획 : 2차 당사국회의 의장국과 장소 및 2011년에 열릴 중간(intersessional) 회의 일정들에 합의했음.
- 국가별 보고서 양식 : 협약 제7조 ‘투명성 조치’에 명시된 의무에 따라 각 당사국은 협약이 자국에서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자국의 상황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당사국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보고서의 양식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집속탄반대연합(CMC)은 개막행사 때를 비롯하여 회의 기간 중 다뤄진 모든 의제들에 대하여 정책 권고와 기대사항을 발언하였다. 집속탄반대연합이 발언을 한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개막행사, 회의 개막 발언, 집속탄반대연합 일반 논평, 보편화, 비축분 폐기, 오염지역정화 및 위험경감교육, 정화기술, 피해자지원, 투명성조치, 국내이행조치, 2011년 계획, 국제협력 및 지원, 협약 이행 및 분쟁, 집속탄보유분 보고서 및 폐기시한 연장 신청.

2. 구체적 의제별 내용

1) 라오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

- 벨기에,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호주, 스위스는 라오스에 대한 지원을 새로이 시작하거나 기존보다 더 늘리겠다고 밝혔으며, 일본과 프랑스는 협약에 서명한 이후로 라오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왔음을 주시시켰다.
- 프랑스는 라오스의 집속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으로 2010년에 373,000 유로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 일본은 국제 협력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약 가입 이후에 라오스를 포함한 국가들의 오염지역정화와 피해자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550만달러 이상을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2) 협약의 보편화(협약 제21조 제1항)

- 협약의 보편화를 지지하는 고무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음. 특히 프랑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몰도바,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페인, 콜롬비아, 슬로베니아, 이태리, 에콰도르, 탄자니아, 가나, 나이지리아, 포르투갈, 지부티, 잠비아, 말리, 부룬디, 팔라우, 말라위, 멕시코, 유엔지뢰행동팀,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비엔티안 행동 계획의 최종점 시안으로 협약의 보편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자는 제안을 하였다.
- 이 세션에서 일본, 프랑스, 벨기에, 영국, 멕시코는 협약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울여온 지역적 그리고 양자간 노력을 강조하였다.
- 보편화 세션의 ‘의장 도우미’ 국가였던 일본은 협약의 보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 영국은 협약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국과 관련된 모든 양자간/지역간 회의(예컨대 미국, 러시아와의 외교채널)를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집속탄의 전지구적 금지를 위한 자국의 노력을 환기하였다.
- 프랑스는 그동안 다른 60개국과 만나 협약의 보편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 벨기에에는 나토와 유럽 지역 포럼에서 협약의 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 멕시코 역시 자국 인근 국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협약의 보편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밝혔다.
- 라오스는 협약의 보편화를 위해 공식/비공식, 양자간/다자간 등 모든 가능한 외교채널을 통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아세안(ASEAN) 회의에서 집속탄금지협약을 주요 의제로 제기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협약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3) 보관과 비축분 폐기(제3조)

- 오스트리아는 당사국회의 첫날 발언에서 회의 개막 이틀 전에 자국의 집속탄 비축분에 대한 폐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벨기에, 콜롬비아, 스페인, 노르웨이 역시 자국의 집속탄 보유분 폐기를 언급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협약이 규정한 시한 내에 보유분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노르웨이는 자국 군대와 Norwegian People's Aid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집속탄을 조금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이 훈련을 하는데에 실제 집속탄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훈련 목적의 집속탄도 모두 폐기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 덴마크는 현재 보유중인 42,000개의 집속탄들에 대한 폐기 작업 경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폭발잔류물 제거(Explosive Ordnance Disposal) 인력 훈련을 위한 용도로 170개의 집속탄은 계속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영국은 협약이 규제하는 시한보다 5년 이른 2013년까지 자국의 비축분을 모두 폐기하는 계획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자국이 보유한 3천 8백만개의 소폭탄 중 46%인 약 1천 8백만 개의 소폭탄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영국 내에 집속탄 폐기를 위한 시설이 없기에 해외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발생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적 부담을 감수해서라도 협약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확히 밝혔다.
- 프랑스는 자국의 비축분 폐기 현황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OGR 155mm 집속탄은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모두 폐기할 예정이고, 2012년부터는 M26 탄약들을 폐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폐기작업은 2014년에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협약이 규제한 폐기시한인 2018년까지는 모두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이러한 폐기작업에 3천-3천 5백만 유로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는 이번 회의에서 자국의 비축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무기 종류, 수량)를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콩고공화국은 기존의 정보에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하였다.
- 현재까지 5개의 당사국(벨기에, 몰도바,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스페인)과 2개의 서명국(콜롬비아, 포르투갈)이 자국의 집속탄 보유분을 모두 폐기하였다.
- 현재까지 5개의 당사국(오스트리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프랑스, 독일, 영국)과 3개의 서명국(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이 비축분 폐기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4개의 당사국(크로아티아, 덴마크, 일본, 슬로베니아)과 3개의 서명국(칠레,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비축분 폐기 작업 개시를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3-1) 훈련 및 연구를 위한 집속탄 보유(제3조 제6항)

- 훈련 및 연구를 위한 집속탄 보유와 관련하여 몰도바, 노르웨이, 몬테네그로, 오스트리아는 자국의 사례를 언

- 급하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집속탄을 보유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 한편 스페인, 프랑스, 호주, 벨기에, 아일랜드는 집속탄을 여전히 남겨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 스페인은 863개의 집속탄을 앞으로도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수치는 협약 가입국이 향후 보유하겠다고 밝힌 수치 중 가장 많은 분량이다. 스페인은 이 보유분들을 마드리드에 있는 국제 지뢰제거 트레이닝 센터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향후 국가별 투명성 보고서에서 이 집속탄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프랑스는 500개의 집속탄과 400개의 소폭탄(모폭탄 바깥에 들어있는)들을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는 자국 관련 법을 인용하면서 집속탄 보유는 지뢰제거훈련과 자국 군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전 세계 집속탄 비축분의 90%가 협약 비당사국 안에 존재한다는 통계를 제시하였다.

4) 오염지역 정화(제4조)

- 알바니아가 자국 영토 내 오염지역의 정화를 끝마쳤다고 밝혔다.
- 레바논은 당사국 회의 1주 전에 집속탄 사고로 1명의 집속탄제거요원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레바논은 아직 전체 오염지역의 48%가 오염된 채로 남아있긴 하지만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으면 2차 당사국회의 때까지 좀 더 진전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 피해자 지원(제5조)

- 피해자 지원에 관한 논의는 친구국가인 오스트리아의 주재 하에 스위스, 벨기에, 호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일본, 크로아티아, 터키, 알바니아, 노르웨이, 라오스, 시에라리온, 과테말라가 발언을 하였고, 집속탄금지연합, 유엔지뢰제거팀, 국제적십자연합을 대표하여 피르즈 알리 알리자다가 발표를 하였다.
- 이 세션에서는 몇가지 사항들이 우선과제로 지적되었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벨기에, 노르웨이, 시에라리온은 피해자 지원 사업을 국가적 장애 지원 정책과 연계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집속탄금지연합과 호주는 통합적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다른 국가들도 피해자 지원과 피해자들의 사회재통합을 위한 종합적 관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일본은 라오스에서 휠체어 제작 워크숍을 진행해오면서 피해당사자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도왔다는 점을 밝혔다. 일본은 시엥꾸앙 주에서 응급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다.
- 각 국의 발언들을 종합해볼 때, 각국 정부들이 피해자 지원 사업 실행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 지뢰금지협약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이행되었던 사례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 투자철회와 해석적 이슈들

- 룩셈부르크는 집속탄 생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모든 국가들에게 강조하였다. 집속탄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자국의 법안이 다른 국가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도 밝혔다.
- 마다가스카르는 '이송'에 관한 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자국은 집속탄이 자국을 통과하는 것은 물론 외국 군의 집속탄을 자국에 보유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할 것이며 집속탄이 사용하는 비당사국과의 군사작전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영국 역시 집속탄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것 그리고 자국 영토 내에서 외국 군대에 의한 집속탄 보유 모두 협약에서 금지되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현재 자국 내에는 외국 군에 의한 집속탄 보유분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7) 비준 상황 보고

- 많은 서명국들이 향후 비준을 위한 계획들을 밝혔다. 특히 가나, 포르투갈, 이태리, 체코, 토고는 향후 빠른 시일 내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간다, 호주, 마다가스카르, 코스타리카, 아프가니스탄, 페루, 라이베리아, 카메룬, 잠비아, 캐나다, 스위스 등 많은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협약 비준을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8) 비당사국들의 참여

- 이번 회의에는 25개국 이상의 비당사국들도 참여하였다. 회의 첫째, 둘째 날에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에리트리아, 중국, 요르단, 수단, 팔레스타인이 발언을 하였다. 특별히 새로운 정보가 나오진 않았지만 협약에 대한 관심과 호의적인 발언들은 긍정적인 신호였다.
- 베트남은 이 협약에 주요 집속탄 생산국과 비축국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집속탄의 피해를 많이 입은 국가중 하나인 베트남은 집속탄 및 다른 불발탄들이 100만톤 정도 남아있으며, 자국 영토의 1/5 정도가 오염되어 있다고 밝혔다. 오염지역을 완전히 정화하는데 최대 천만 달러의 비용과 50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중국은 집속탄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집속탄 문제를 다루기 위한 테이블로써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로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집속탄금지협약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집속탄금지협약 당사국들과 협력하고 라오스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9) 투명성 조치(제7조)

- 이 세션에서는 국가별 보고서와 투명성 확보가 각국의 요구를 짚어내고 해결방안들을 효과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호주, 라오스, 말리,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엔지뢰행동팀, 국제적십자, 집속탄금지연합은 종합적이고 정확한 국가별 보고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참석국들은 또한 협약에 비준한 처음 30개국들의 첫 번째 보고서 제출시한이 2011년 1월 27일임을 상기하면서 신속히 작업에 들어갈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10) 국내 이행 조치(제9조)

- 이 세션은 뉴질랜드의 주재하에 진행되었다. 뉴질랜드는 각 당사국들이 하루 속히 국내적 이행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뉴질랜드는 자국에서 집속탄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내법안 입법절차를 끝마쳤다.
- 유엔 지뢰행동서비스(UNMAS)와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당사국들의 국내이행조치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국내이행입법을 위한 매뉴얼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 영국은 자국 이행입법에 대한 요약을 하였다. 영국은 투자, 이송, 프로모션, 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집속탄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아일랜드의 이행법안에는 공적기금의 집속탄의 투자금지가 담겨있다.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 타국의 이행입법 마련과정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호주는 협약비준 과정의 일환으로 이행입법안을 이미 마련해놓았다고 밝혔다. 관건은 집속탄금지연합 소속 호주 단체들이 호주 정부와 협력하여 협약의 의무사항을 최대한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11) 4가지 공식문서 채택

- 당사국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사들은 회의 마지막 날인 12일 비엔티안 선언, 비엔티안 행동계획, 2011년 프로그램, 국가별 보고서 양식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야심찬 행동 계획 그리고 협약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목소리가 현실로 실현되는 데에 협약 발효로부터 불과 4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국가별 보고서 양식과 향후 프로그램도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담보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3. 2011 비엔티안 행동 계획 주요 내용

- **비축분 폐기**

협약의 의무사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내 집속탄 비축분을 8년 이내에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년 당사국 회의 전까지(1년 내) 집속탄 폐기를 위한 일정과 예산편성 계획을 끝마쳐야 한다.

- **오염지역 정화 및 위험경감 교육**

협약의 의무사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10년 이내에 집속탄 오염지역에 정화를 끝마쳐야 한다. 그리고 다음 당사국 회의까지(1년 내) 자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오염지역을 모두 파악하고 정화작업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동시에 정화작업도 즉시 착수해야 한다. 위험경감 교육 역시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피해자 지원**

협약의 의무사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집속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전례없이 높은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집속탄 피해 국가들은 피해자 지원업무를 총괄할 기관을 6개월 이내에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국제 원조**

협약의 의무사항에 따라 원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집속탄 피해 국가에서 오염지역을 정화하고 피해자 지원하기 위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당사국 회의에서 집속탄 피해국들은 2011년에 오염지역 정화와 피해 지원사업을 더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지원국가들 역시 지원 요청에 대한 원조를 더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 **보고**

각 당사국들은 집속탄 피해자들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합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의 상황과 우리의 역할

1. 집속탄 그리고 한국

- 전세계 8개 집속탄 생산기업 중 2개가 한국에 존재(한화, 풍산)
- 정부에 여러 차례 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의 입장 재차확인
 - 한국은 특수한 안보적 상황이라서 집속탄을 포기할 수 없다
 - 구형 집속탄 생산은 중단했고, 앞으로는 신뢰도가 높은 자폭구조를 가진 집속탄만을 생산하겠다(집속탄은 불발탄이 문제이고, 기술적으로 불발율을 줄이면 해결가능하다)
 - 생산수출,비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사기밀이라서 밝힐 수 없다는 입장
- CCW(재래식무기금지협약) 제5의정서 2008년에 비준. CCM이 아닌 CCW에 적극참여중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음.
- 2010년 국방예산에서 집속탄 관련 예산 721억.
- 한국은 미국이 생산하는 모든 종류의 집속탄을 수입하고 있음. M26 로켓, M26A1 장사정 로켓, 다연장로켓시스템 발사용 ATACMS 미사일 등
- 한화 : 다연장로켓시스템(MLRS)과 2.75인치 다목적소폭탄 로켓들을 생산하며, 공중투하용(헬기, 항공기) 집속탄도 생산판매중. 이는 미국이 사용하는 M73과 유사하며 2003년 이라크 침공 때 미군이 쏟아부은 1만800발의 집속탄과 같은 종이라고 알려졌음. 과거에는 KCBU-58B를 생산했음. 2008년 3월 파키스탄에 M261 다목적소폭탄 로켓들(9개의 M73 소폭탄을 지니고 있다)을 수출했음. 한화는 '방어 목적으로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변명했음.
- 풍산 : 88개의 K224 소폭탄이 들어 있는 155mm 발사체 K308 DPCIM TP, 49개의 K221 소폭탄을 가지고 있는 155mm 발사체 K310 DPCIM B/B 생산. 2004년 11월 파키스탄 군수공장과 K310 155mm 장사정 이중목적 재래식탄 발사체를 공동생산 계약을 맺은 바 있고 파키스탄과 함께 공동 수출 마케팅을 펼치고 있음. 풍산 측은 '한국산 집속탄은 자폭 능력이 있어 민간인을 해치지 않는다'고 변명함.

2. 지금까지 해온 집속탄 금지를 위한 활동

- 2009년 12월 3일 홍대에서 신호등 캠페인, 서울역 파병반대집회에서도 진행
- 2010년 4월부터 한화 을지로본사와 풍산 충무로본사 앞에서 매달 피스몹 진행
- 매달 평화군축집회, 공장 앞 1인시위, 한화와 풍산 면담요청 등(평통사)
- 2010년 8월 1일 발효를 앞두고 CCM 가입촉구 기자회견, 토론회
- 평화군축박람회에서 캠페인
- 라오스에서 열린 CCM 1차 당사국 회의 참가
- 연평도에 MLRS 배치와 관련하여 성명발표

3. K-9 자주포와 집속탄

- 11월 23일 북한과의 연평도 교전에서 한국은 K-9 자주포를 이용하여 80여발의 대응사격을 실시. K-9은 99년 연평도 배치후 첫 실전사격.
- 155mm 곡사포가 사용하는 탄 종류 : M107 HE(사거리 18km), M549A1 HE-RAP(30km), K310 BB/DP-ICM

(36km), K307 BB/HE(40.6km), K315 HE-RAP(56km), K308 DP-ICM TP

- DP-ICM(Dual Purpose-Improved Conventional Munition, 이중목적개량고폭탄) : 전차와 사람 모두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 K308 DP-ICM TP (88개의 소폭탄 내장, 연습용), K310 BB/DP-ICM (49개의 소폭탄 내장) 자탄 1발의 살상반경이 7m이상, 최대 사거리는 기존 곡사포에서 발사할 경우 28km, 신형 자주포에서 발사할 경우에는 36km, 모(母)탄 1발의 최대 살상면적은 5,100m²
- 모두 풍산에서 생산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음.
- 언론에 나온 군당국자의 발언에 따르면 1발당 가로, 세로 50m의 범위를 초토화시킨다고 했고, 일반적으로 훈련에서 고풍탄을 사용한다고 알려져있음. DP-ICM은 훈련용으로는 비용면에서 단가가 비싸고 불발탄제거의 어려움이 있기도 함. 즉 이번 대응사격에서는 K307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앞으로 더 강력한 효과를 위해 DP-ICM을 사용하는 것은 시간문제.

4. MLRS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다연장 로켓발사 시스템)

- 29일 연평도에 배치된 M270 MLRS 6문, 뉴스에서 보여주는 영상과 설명.
- 227m 기본형 로켓탄인 M26의 경우 12발 발사에 60초 소요, 총 644발의 소폭탄이 내장. 사거리 32-45km 이 소폭탄 역시 DP-ICM의 한 종류.
- ATACMS(Army TACTical Missile System)는 MLRS 발사대에 탑재되 발사되며 2발을 장착할 수 있음, 중거리 지대지미사일, 사거리 165-300km, 총 4종류 중 950개의 자탄을 내장하며 최대 사거리가 165Kkm인 ATACMS block1, 자탄을 줄이는 대신 사거리를 확장한 block1A가 한국에 있다고 함. 이 무기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확산탄으로 평가되는데, 자탄이 최대 950발이 내장(ATACMS block1)되며 개량형(block1A)의 경우 최대사거리가 300km에 달해 북한의 신의주와 강계까지가 그 표적이 된다. 1발당 가격이 13억원 정도.
- 한화는 대전에 227mm 대구경 MLRS 생산 공장이 있음.
- 만약 MLRS를 사용할 경우, 북한도 보유하고 있는 집속탄을 사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외국 사례를 통해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음. 어떻게든 막아야함.

5. 집속탄을 금지하기 위해 우리는..

- 시기적으로 집속탄에 대해 알리기 좋은 시기 : 캠페인 경험상 사람들은 집속탄에 대한 정보자체가 없는 편이라서 집속탄이 어떤 폭탄인지 설명을 해야했는데, 지금은 언론을 통해 MLRS의 위력이 이미 알려진 상태임. 그래서 저게 바로 집속탄이고, 얼마나 비인도적이고 통제불가능한 무기인지, 집속탄 사용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더 쉬운 조건이지 않나.
- 강력하고 성능좋은, 즉 사람을 더 많이 더 잘 죽일 수 있는 무기들을 보유하고 해서 더 안전해지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정부를 움직이기 위한 NGO의 역할이 중요 : CCM을 이끌어낸 것도 시민사회의 역할이 컸던것처럼. CCM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캠페인, 가입촉구 서명, 엽서쓰기, 언론기고, 로비활동 등
- 한국이 이미 가입한 CCW 제5의정서 활용. 사용한 무기로 인해 생기는 전후의 피해에 관한 책임을 강화, ERW(전후잔존폭발물)에 대한 구제조치.
- 집속탄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
- 비인도적 기업, 투자기업에 대한 압박
천안북일교육재단, 미래에셋증권,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HMC투자은행,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대우증권, 동부증권, 신흥증권, SK증권, 우리투자증권, 한화증권, 국민연금관리공단

집속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

이 협약 당사국들은

민간인 집단과 개별 시민들이 무장갈등으로 인한 고통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집속탄이 애초의 공격계획대로 사용되지 못하거나 사용 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고통을 종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며,

잔류집속탄이 여성 및 아동을 비롯한 민간인의 사상을 야기하는 상황, 잔류집속탄에 의한 인명손실로 인한 경제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 잔류집속탄이 갈등종료 지역의 부흥과 재건을 방해하는 상황, 잔류집속탄이 망명자, 일국 내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자의 귀환을 가로막거나 지연시키는 상황, 잔류집속탄이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의 평화재건사업과 인도적 지원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리고 집속탄의 사용 이후 그 잔해가 이후 수년간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작전용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집속탄 비축분으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비축분들의 조속한 폐기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며,

세계 전역에 널려있는 잔류집속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효율적이고 상호협력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것들이 확실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기여를 하는 것의 필요성을 믿으며,

집속탄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 재활 및 심리적 지원과 동시에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을 결의하며,

집속탄 피해자들을 돕는 데에 있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고 또한 취약계층의 특수한 요구들을 반영할 필요성을 인지하며,

국제장애인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내용과 관련하여 특히 집속탄금지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장애인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며,

다양한 종류의 무기의 피해자들이 갖는 권리와 요구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여러 포럼들에서 제기된 노력들을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성에 유념하고, 또 다양한 종류의 무기들로 피해를 받은 집단들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히 하며,

집속탄금지협약이나 다른 국제협약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모든 민간인과 군인들은 공공의 양심과 인도주의 원칙, 기존의 관습에서 도출된 국제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보호받는다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일국의 군대가 아닌 무장집단이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이 협약 당사국들에게 부과된 금지 행위들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며,

1997년 탄생한 대인지뢰전면금지협약에 포함된 국제 대인지뢰 금지 기준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환영하며,

또한, 매우 위험하고 무차별적 피해를 불러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무기들을 금지하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에 추가로 포함된 내용인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되고 2006년 11월 12일에 발효된 점을 환영하고, 분쟁이 종료된 지역에서 잔류집속탄으로부터 민간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되길 소망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호(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무장갈등지역의 아동들에 관한 결의안 1612호(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12 on children in armed conflict)를 기억하며,

지난 수년간 집속탄의 사용을 금지, 제한 혹은 사용과 비축, 생산, 이송을 유예하기 위한 노력들이 국가적, 지역적, 전지구적 차원에서 발전된 양상으로 전개되어 온 점을 환영하며,

집속탄으로 인해 야기되는 민간인들의 고통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국제적 차원의 목소리에 반영된 인도주의의

정신을 심화시키는 공공의 양심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러한 목적 하에 그동안 유엔과 국제적십자기구, 집속탄반대연합(Cluster Munition Coalition) 그리고 무수한 세계의 비정부기구들의 노력을 인지하며, 집속탄에 관한 오슬로 회의의 선언의 내용 중 특히 회의 참석국들이 집속탄 사용으로 야기된 광범한 결과를 인지했고,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집속탄의 사용, 생산, 이송, 비축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2008년까지 만들어내기로 결의했으며, 회의 참석국들이 집속탄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오염 지역 정화, 위험감소를 위한 교육, 집속탄 비축분의 제거를 위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한 점을 재확인하며, 집속탄금지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이 이 협약을 준수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강조하고, 이 협약의 보편화와 완전한 실현을 위해 분투할 것을 결의하며, 국제인도주의법의 원칙과 규범의 내용 중 특히 무장갈등에 연루된 국가들이 전쟁의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전쟁을 수행중인 국가들은 언제나 비무장 민간인과 전투원, 민간 시설과 군사적 목표물 이 양자를 구별해야 하고 이에 따라 작전의 대상도 군사적 목표물에만 한정되어야 하며, 군사작전 수행 중에는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따로 분리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유의를 해야 하며, 민간인 집단과 개별 시민들이 군사작전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들에 기반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동의하였다.

제1조 일반의무 및 적용범위

1. 당사국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 (a) 집속탄을 사용하지 않는다.
 - (b) 집속탄을 개발, 생산하거나 획득, 비축, 유지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직간접적인 이전을 하지 않는다.
 - (c) 협약에 의해 금지된 모든 행위에 가담하도록 원조, 조장,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본조 제1항은 비행기에 장착되어 투하 및 분산되는 용도로 특별히 고안된 소형 폭발물 일반에 걸쳐 적용된다.
3. 이 협약은 지뢰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1. “집속탄 피해자”는 집속탄의 사용으로 인해 죽거나 육체적, 심리적 피해를 받은 사람, 경제적인 손실과 사회적 배제 혹은 자신들의 권리 실현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 모두를 아우른다. 이 범주에는 집속탄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까지도 포함된다.
2. “집속탄”은 분산되도록 설계되거나 20킬로그램 미만의 폭발성 소폭탄을 방출하는 재래식 무기 및 방출된 폭발성 소폭탄을 포함한다. 이 정의가 아래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a) 불빛이나 화염, 조명탄, 금속조각을 배출할 목적으로 고안된 폭탄이나 소폭탄, 또는 공중 방어 역할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폭탄.

- (b) 전기, 전자 효과를 목적으로 고안된 폭탄이나 소폭탄.
 - (c) 무차별 지역효과와 불발 집속탄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의 기술적 특성들을 지닌 폭탄
 - (i) 각각의 폭발물에 10개 미만의 소폭탄을 가지고 있는 경우;
 - (ii) 폭발성 자폭탄 각각의 무게가 4킬로그램을 넘지 않는 경우;
 - (iii) 각각의 폭발성 자폭탄들이 하나의 단일한 대상을 찾아 공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경우;
 - (iv) 각각의 폭발성 자폭탄들에 전자 자기파괴 메커니즘이 장착된 경우
 - (v) 각각의 폭발성 자폭탄들에 전자 자기비활성화 기능이 장착된 경우;
3. “폭발성 소폭탄”은 목적 수행을 위해 집속탄에서 방출되어 공격의 이전 순간 이후에 걸쳐 폭발 효과를 일으키도록 제작된 재래식 무기를 의미한다.
 4. “ 실패한 집속탄”은 발사 및 투하 혹은 다른 방식으로 발사되었으나 폭발성 소폭탄을 방출하지 못한 집속탄을 의미한다.
 5. “불발 집속탄”은 집속탄으로부터 분리 혹은 방출되었지만 애초의 의도대로 폭발하지 않은 “폭발성 소폭탄”을 의미한다.
 6. “버려진 집속탄”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거나 버려진, 따라서 애초 사용했던 집단의 통제를 더 이상 받지 않은 상태로 놓여있는 집속탄 혹은 폭발성 소폭탄을 의미한다. 이것들은 사용을 위해 준비되었던 것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7. “잔류집속탄”은 실패한 집속탄, 버려진 집속탄, 불발 집속탄과 불발 소형 폭탄을 의미한다.
 8. “이송”은 일국 영토 안팎으로 이루어지는 집속탄의 물리적인 이동 뿐만 아니라 집속탄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의 이전을 포함하지만, 잔류집속탄이 남아있는 토양의 이전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9. “자기파괴 메커니즘”은 집속탄의 초기 작동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에도 스스로 파괴될 수 있는 기능이 내재된 자동기능 기제를 의미한다.
 10. “자기비활성화 기능”은 예컨대 집속탄 작동에 필수적인 배터리의 기능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소진시킴으로써 집속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도록 만드는 자동 기능을 의미한다.
 11. “집속탄 오염 지역”은 잔류집속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12. “지뢰”는 지면 아래와 표면 혹은 지면 근처 혹은 다른 표면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차량의 출현, 접근 혹은 접촉에 의해 폭발하는 폭발물을 의미한다.
 13. “소형 폭발물”은 자체 추진이 되지 않으며, 목적 수행을 위해 방출기로부터 투하되어 공격의 이전 순간 이후에 걸쳐 폭발 효과를 일으키도록 제작된, 20킬로그램이 넘지 않는 재래식 폭탄을 의미한다
 14. “방출기기”는 비행기에 부착되어 소형 폭발물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투하 순간에 소형 폭발물들을 방출하는 기기를 의미한다.
 15. “불발 소형 폭탄”은 방출기로부터 투하 혹은 분리되어 나왔지만 애초의 의도대로 폭발하지 못한 소형 폭발물을 의미한다.

제3조 보관과 비축분 폐기

1. 당사국들은 자국의 규제에 맞추어 관할 영역 하에 작전 용도로 비축한 모든 집속탄을 폐기용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2. 당사국들은 본 항 제1조에 언급된 모든 집속탄을 즉각 폐기하거나 향후 폐기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늦어도 이 협약이 해당 국가에서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8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모두 폐기를 해야 한다

다. 당사국들은 집속탄 폐기의 방식이 공공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국제 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책임을 가진다.

3. 만약 당사국이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집속탄을 해당국에서 협약이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8년 이내에 모두 폐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경우에는 해당 당사국이 당사국 회의나 집속탄 폐기 시한 연장을 위한 평가회의에 기한 연장 요청을 낼 수가 있으며 이 때 연장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4년이다. 당사국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대 4년의 기간 연장을 한 번 더 신청할 수가 있다. 이 때 요청된 기한 연장의 기간은 해당국이 본 조 제2항에 명시된 의무를 완수하는데 필요하다고 엄정하게 산정된 기간을 넘어설 수 없다.

4. 기간연장을 위한 각 요청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요청된 연장 기한

(b)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집속탄을 폐기하는 데에 당사국이 사용할 수 있거나 혹은 요구되는 경제적, 기술적 방안 그리고 예외적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는 기한 연장 신청서의 구체적 설명

(c) 집속탄 비축분 폐기가 완료되는 시점과 폐기방식에 관한 계획

(d) 당사국에서 협약이 발효된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집속탄과 폭발성 소폭탄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협약 발효 시점 이후에 발견된 추가 집속탄과 폭발성 소폭탄의 종류와 수량

(e) 본 조 제2항에 명시된 시기에 폐기된 집속탄과 폭발성 소폭탄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f) The quantity and type of cluster munitions and explosive submunitions remaining to be destroyed during the proposed extension and the annual destruction rate expected to be achieved.

(f) 연장된 폐기 시한 동안에 폐기될 집속탄과 폭발성 소폭탄의 종류와 수량, 향후 연간 폐기율 달성 목표치

5. 당사국회의 혹은 평가회의에서는 본 조 제4항에 언급된 요소들을 고려하여 폐기 시한 연장 신청의 내용을 평가하고 회의 참석국들의 다수결 투표에 따라 해당 연장 신청을 통과시키거나 거부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애초 신청된 연장 시한의 기간을 줄여서 통과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해당국의 상황에 적절한 모범사례를 제안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폐기 시한 연장 신청은 해당 신청안이 미리 검토될 수 있도록 당사국 회의나 평가회의가 열리기 최소 9개월 전에는 이루어져야 한다.

6. 본 협약 제1조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집속탄 개발, 집속탄 및 폭발성 소폭탄 발견과 제거를 위한 훈련, 혹은 집속탄 대응책 개발을 위해 최소한의 집속탄을 보유하거나 획득하는 것은 용인된다. 이 때 보유 또는 획득되는 폭발성 소폭탄의 양은 앞서 언급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넘어설 수 없다.

7. 본 협약 제1조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6항에 명시된 목적 뿐만 아니라 집속탄 폐기를 목적으로 타국으로 이송하는 것은 용인된다.

8. 본 조 제6항과 제7항에 언급된 목적에 부합하여 집속탄을 보유, 획득 또는 이송하는 당사국들은 이에 해당하는 집속탄 및 폭발성 소폭탄들의 사용 계획과 실제 사용된 용도, 종류, 수량 및 제품 번호에 관한 구체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집속탄이나 폭발성 소폭탄이 위의 목적을 위해 다른 국가로 이송이 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보고서 안에 수취 국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당사국이 집속탄과 폭발성 소폭탄을 보유, 획득 또는 이송한 해마다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4조 잔류집속탄의 파괴 및 제거와 위험 감소를 위한 교육

1. 당사국은 관할영역 내 집속탄 오염지역에 산재한 잔류집속탄들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파괴 및 제거해야

한다

(a) 당사국에서 협약이 발효된 시점에 잔류집속탄이 당사국의 관할 영역 안에 존재할 경우 당사국은 이 잔해 물을 파괴하고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즉각 기울여야 하며 이 모든 작업은 협약 발효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완수되어야 한다.

(b) 당사국에서 협약이 발효된 시점 이후에 당사국 관할 영역 내에 잔류집속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잔해 물을 파괴하고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 즉각 착수되어야 하며 이 작업은 무장충돌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완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c) 본 조 본 항의 (a), (b)절에 명시된 의무를 하나라도 충족시켰다면 이 내용을 바로 차기 당사국 회의에서 발표해야 한다.

2.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의무들을 수행함에 있어 당사국들은 국제 협력과 지원에 관한 본 협약 제6조의 조항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a) 당사국이 관할하는 영토 안에 존재하는 집속탄 오염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잔류집속탄으로 인한 위협을 조사, 평가, 기록한다.

(b) 집속탄 오염지역 표시, 민간인 보호, 집속탄 파괴 및 제거의 관점에서 평가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이러한 활동 및 재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토대, 경험, 방법론을 바탕으로 활동 자원을 수합하고 국가적 계획을 세운다.

(c) 당사국 관할 영토 내의 집속탄 오염지역에 민간인들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펜스 등의 장치를 통해 경계선을 명확히 표시하고, 집속탄 오염지역이 감독 및 보호될 수 있는 모든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위험 의심 지역에서는 집속탄의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경계선 경고 표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위험 지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식은 최대한 잘 보이고, 읽기 쉽도록 그리고 환경의 영향에 마모가 덜 되도록 마련이 되어야 하고 표식을 기준으로 어느 쪽이 집속탄 오염지역이며 어느 쪽이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는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d) 당사국의 관할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잔류집속탄을 제거하고 파괴한다; 그리고

(e) 잔류집속탄으로 인해 위협이 상존하는 집속탄 오염지역의 내부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위험 경감 교육을 실시한다.

3.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활동들을 수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들은 국제지뢰행동기준을 비롯한 국제 기준들을 고려해야 한다.

4. 이 조항은 한 당사국이 본 협약을 발효되기 이전에 사용했거나 버린 집속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 다른 당사국에서 본 협약이 발효되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당사국 관할 영토였던 곳에서 사용한 뒤 남아있는 잔류 집속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a) 이러한 경우에 전자의 당사국은 후자의 당사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극 권장되며 특히나 기술적, 재정적, 물질적 혹은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이 지원의 방식은 양자협상을 통해 혹은 쌍방이 합의한 제3자 집단 예컨대 유엔이나 관련 기구 등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잔류집속탄들의 표시, 제거 및 파괴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b) 위에 제시된 지원에는 가능하다면 사용된 집속탄의 종류와 수량, 집속탄이 폭발한 정확한 위치, 잔류집속탄이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5. 만약 한 당사국이 협약 발효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본 조 제1항에 제시된 모든 잔류집속탄의 제거와 파괴를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경우에 해당 당사국은 당사국 회의나 평가회의에서 최장 5년에 걸쳐 잔류집속탄 제거 시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연장 시한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당사국의 의무를 완수하는데에 필요한 것으로 엄격하게 산정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6. 기한 연장을 위한 요청은 본 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해당 당사국의 잔류집속탄 제거 시한이 종료되기 이전

에 당사국 회의나 평가회의로 제출되어야 한다. 각 요청들은 해당 요청이 검토될 당사국 회의나 평가회의가 열리기 최소 9개월 전에는 제출이 되어야 한다. 각 요청들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요청된 연장 시한
- (b)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청된 기간 동안 모든 잔류집속탄을 제거하는 데에 당사국이 사용할 수 있거나 혹은 요구되는 경제적, 기술적 방안
- (c)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초기 10년 그리고 이후 연장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지뢰제거 및 국가 차원의 잔해물 제거 사업의 진행 상태 그리고 향후 진행할 잔류집속탄 제거 작업의 계획
- (d) 해당 당사국에서 본 협약이 발효되던 시점의 집속탄 오염지역의 총 범위 그리고 본 협약 발효 이후에 잔류집속탄이 발견된 추가 지역의 범위
- (e) 본 협약 발효 이후에 잔류집속탄이 제거된 집속탄 오염지역의 총 범위
- (f) 요청된 연장 기한동안 잔류집속탄을 제거할 집속탄 오염지역의 총 범위
- (g)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초기 10년의 기한 동안 해당 당사국이 관할 영토 내의 잔류집속탄을 제거하는 데에 당사국의 역량 발휘를 방해한 만든 환경요인, 그리고 요청된 연장 기한 동안에 당사국이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국이 가진 역량을 방해할 것으로 여겨지는 요인
- (h) 요청된 연장 기한이 지나는 인도적,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함의 그리고
- (i) 이 기한 연장 요청과 관련한 다른 정보들

7. 당사국 회의와 평가회의에서는 본 조 제6항에서 언급된 요소들 중 특히나 보고된 잔류집속탄의 양에 주목하면서 해당 당사국의 요청을 평가하고 회의 참석국들의 다수결 투표에 따라 해당 연장 신청을 통과시키거나 거부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애초 신청된 연장 시한의 기간을 줄여서 통과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해당국의 상황에 적절한 모범사례를 제안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8. 지금까지 언급된 기한 연장은 본 조 제5,6,7항에 따라 새로운 연장 요청이 있을 때 최장 5년까지 갱신될 수 있다. 기한 연장 재신청을 할 때에 해당 당사국은 본 조의 내용에 따라 기존에 연장되었던 기한 동안에 이루어진 작업들에 관한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5조 피해자 지원

1. 당사국은 관할영역내의 집속탄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국제인도/인권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law)에 일치하여 연령과 성별을 반영하는 의료보장(medical care), 재활(rehabilitation),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확보해야 한다. 당사국은 확산탄피해자들에 관한 신뢰할만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본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 당사국은:

- (a) 집속탄 피해자들의 요구를 평가해야 한다.
- (b) 필요한 국내법과 정책을 개발, 이행, 시행해야 한다.
- (c) 앞서 제시한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을 포함하여 국가적인 계획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련 행위자들의 몫과 역할을 존중하는 가운데 해당 국가가 처한 현재 상황, 개발 수준, 인권의 틀과 매커니즘 속에서 구체적인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d) 국내적 국제적 재원을 가동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e) 집속탄 피해자들 상호간에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관계에서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고, 피해자 지원에서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오로지 의료적, 재활, 심리적 혹은 사회경제적 필요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야 한다.

(f) 집속탄 피해자들 및 그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g) 본 조에 언급된 피해자 지원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부인에 초점기관(focal point)을 지정하고,

(h) 의료보장, 재활, 사회적 지원, 심리적 지원, 사회경제적 통합의 영역을 포괄하는 적절한 지침과 관행을 구체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국제협력과 지원

1.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지원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
2. 역량을 갖춘 당사국은 이 협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집속탄의 피해를 당한 국가에게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지원은 유엔체제, 국제·권역·국내 조직이나 기관, 비정부 조직이나 기구 또는 상호주의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3. 당사국은 이 협의 이행에 관하여 장비 및 과학기술적 정보의 가능한 한 완전한 교류를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거기에 참여할 권리를 보유한다. 당사국은 인도적 목적을 위한 제거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적 정보의 제공과 인수에 대하여 부당한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
4. 이 협약 제4조 4항에 따른 의무에 덧붙여, 역량을 갖춘 당사국은 잔류집속탄, 비축집속탄의 제거와 파괴를 위한 지원, 집속탄 제거 기술과 수단에 관한 정보, 집속탄 제거와 파괴, 그 활동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명단, 전문가기구 또는 국가적 창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역량을 갖춘 당사국은 비축집속탄 파괴를 위한 지원의 의무를 가지며, 또한 이 협약 제4조에 명시된 잔류 집속탄 표기, 위험 경감 교육, 민간인 보호 및 집속탄 제거와 파괴를 위한 요구와 실제적 수단을 확인하고 평가하여 우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이 협약이 발효된 이후 당사국 관할 영역 내에서 잔류집속탄이 발생한 경우에 역량을 갖춘 당사국은 피해를 받은 국가에 긴급 지원을 즉각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7. 역량을 갖춘 당사국은 연령과 성별을 반영하는 의료보장(medical care), 재활(rehabilitation),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 협약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무를 부담한다. 그러한 협력은 유엔체제, 국제·권역·국내 조직이나 기관, 국제적십자사, 국내적십자사, 적신월회, 국제적신월회, 비정부 조직이나 기구 혹은 상호주의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8. 역량을 갖춘 국가는 집속탄 피해국가에서 집속탄 사용의 결과로서 요구되는 경제적 사회적 복구에 기여하는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9. 역량을 갖춘 국가는 본 조의 지원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기금(trust funds)에 기여해야 한다.
10. 지원을 요구하고 받는 당사국은 이 협약의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제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례들을 고려하여 국제법과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인원과 물류 및 장비의 드나듦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11. 각 당사국은 국가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유엔 기구와 권역 기관, 타 당사국 혹은 이와 대등한 자격을 가진 국가간·비국가 기구에 다음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a) 해당 당사국의 관할 영역 내에 잔류집속탄이 남아있는 영역과 그 잔류집속탄의 종류
 - (b) 국가적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정적, 기술적, 인적 지원
 - (c) 해당 당사국의 관할 영역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잔류집속탄을 제거하고 파괴하는 데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 (d) 잔류집속탄에 의한 부상이나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위험 경감 교육 프로그램과 인식 재고 활동
 - (e) 집속탄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 (f) 국가적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당사국 그리고 이 당사국과 함께 활동을 해나갈 관련 국가, 국가간 혹은 비국가 기구간의 협력관계
- 12 이 조의 조항들에 따라 지원을 주거나 받는 당사국들은 상호간에 합의한 지원 프로그램의 종합적이고 즉각적인 실행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투명성 조치

1. 당사국은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180일 이내에 유엔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의 이행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보고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 (a) 이 협약 제9조에 언급된 국내이행조치
 - (b) 이 협약 제3조 1항에 명시된 폭발성 소폭탄을 비롯한 자탄의 유형, 수량 그리고 가능하다면 각각의 제품번호
 - (c) 해당 당사국에서 이 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생산된 집속탄 그리고 현재 보유한 집속탄의 유형별 기술적 특성. 이 정보들은 집속탄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작업에 활용이 된다. 이 정보들에는 최소한 집속탄의 크기, 신관, 폭발성 물질, 금속성 물질, 컬러 사진 그리고 잔류집속탄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d) 집속탄 생산시설의 용도변경계획의 진행상황.
 - (e) 집속탄 파괴 방식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이 협약 제3조에 따른 집속탄 및 폭발성 소폭탄 파괴 계획의 진행상황 그리고 파괴 지역에 관한 정보, 적절한 안전 및 환경 기준.
 - (f) 제3조상 파괴되는 확산탄의 유형과 사용된 파괴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 파괴지역 그리고 적절한 안전 및 환경 기준.
 - (g) 본 항의 하부 조항 (e)에 명시된 집속탄 파괴계획과 제3항에 따른 파괴계획이 완수된 이후에 발견된 폭발성 소폭탄을 포함한 집속탄의 비축현황.
 - (h) 당사국 관할 영역 내에 위치한 집속탄 오염 지역의 규모와 위치, 오염 지역과 집속탄이 사용된 지역에 남아있는 잔류 집속탄의 유형과 수량에 관한 최대한 자세한 정보.
 - (i) 제4조에 따른 잔류 집속탄의 제거와 파괴의 현황, 제거된 집속탄 오염 지역의 규모와 위치, 제거된 잔류 집속탄의 양.
 - (j) 당사국 관할 영역 내 집속탄 오염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에 대한 위험경감교육과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경고에 관한 조치
 - (k) 이 협약 제5조에 명시된, 연령과 성별을 반영한 적절한 의료 지원, 재활 및 심리적 지원, 집속탄 피해자들의 사회·경제적 통합, 집속탄 피해자들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등의 의무이행현황.
 - (l) 이 조항에 규정된 조치를 이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명칭과 접촉창구
 - (m) 이 협약 제3조, 제4조, 제5조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확보하고 있는 국가 재정 및 재원의 규모
 - (n) 이 협약 제6조에서 규정한 국제협력과 지원의 규모, 유형, 지원대상국.
2. 각 당사국은 본 조 제1항에 상응하는 정보를 매년 갱신하여 그 해 4월 30일 이전에 유엔사무총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유엔사무총장은 접수한 모든 보고서를 당사국들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8조 다른 당사국에 대한 협약이행 실태의 해명요구

1. 각 당사국은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 및 논의와 작업을 진행한다.
2.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협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때에는 유엔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해명요청서(a request for Clarification)를 다른 당사국에 보낼 수 있다. 이 요청서는 모든 적절한 정보와 함께 작성되어야 한다. 해명요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련국은 근거가 부족한 해명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국은 28일 이내에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해당 사안을 해명하는 정보를 담은 답변서를 제공해야 한다.
3. 해명을 요청한 국가가 규정된 기간 내에 답변서를 받지 못하거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한 때에는 이 문제를 유엔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차기 당사국회의(The next Meeting of States Parties)에 회부할 수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회부된 해명요청사안을 관련된 모든 정보와 함께 협약에 가입된 모든 당사국으로 전한다. 관련된 모든 정보는 해명할 권리를 지닌 당사국으로 전달이 되어야 한다.
4. 당사국회의가 계속 중인 때에는 모든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의 선량한 직책을 활용하여 요청받은 해명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5. 본 조 제3항에 따라 해명요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당사국회의는 회부된 문제에 대하여 관련당사국이 제출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안을 더 고려할 것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한다. 당사국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더 고려하기로 결정을 내린 경우에 국제법에 부합하는 적절한 절차의 개시를 포함하여 이 사안을 규명하거나 해명할 수 있는 추가 방법과 수단을 관련 당사국에 제안할 수 있다.
6. 본 조 제2항과 제5항에 제시된 절차에 더하여, 당사국회의는 이행실태의 해명을 위하여 일반적인 절차(general procedures)나 특별한 장치(specific mechanisms)를 채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당사국회의에서 적절하다고 여기는 본 협약의 조항에 맞추어 의무불이행 사례에 대한 결의문과 사실관계들이 포함된다.

제9조 국가적 이행조치

협약상 당사국에 대해 금지된 활동을 방지하고 억제하는 형사적 제재를 포함해서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적, 행정적, 여타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1.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두 당사국 혹은 그 이상의 당사국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관련국들은 당사국회의의 논의와 국제 사법 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협상이나 여타 평화적 방식을 통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상호간 협의를 해야 한다.
2. 당사국 회의는 분쟁 발생시에 중재를 하거나 관련 당사국이 중재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하거나 상호 협의한 중재 프로세스의 시한을 권고하는 등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분쟁의 해결을 도울 수 있다.

제11조 당사국회의

1. 당사국들은 협약의 적용이나 이행과 관련한 문제를 고려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국회의(Meeting of States Parties)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당사국회의에서 다루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 (a) 협약의 작동과 실태
- (b) 협약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서 제기되는 사안
- (c) 제6조에 따른 국제적 협력과 지원
- (d) 잔류집속탄의 제거를 위한 공학기술의 개발
- (e)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당사국들의 소위원회
- (f)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당사국들의 소위원회

2. 최초 당사국회의는 이 협약의 효력이 발생 한 이후 1년 이내에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한다. 후속회의는 제1차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 때까지 매년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한다.

3.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유엔, 기타 국제기구나 단체, 권역기구,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적신월회협회, 기타 비정부기구는 절차규칙에 따라 위의 회의들에 참관인으로 초청될 수 있다.

제12조 평가회의

1. 평가회의는 이 협약이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한다. 추가적인 평가회의는 한 개 이상의 당사국이 요청하였을 경우 양 평가회의 사이의 기간이 5년 이상일 때에 유엔 사무총장의 주재로 열린다. 협약에 가입한 모든 당사국들은 각 평가회의마다 참석을 해야 한다.

2. 평가회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협약의 작동과 실태를 평가하는 것
- (b) 제11조 제2항에 언급된 후속 당사국회의의 필요성과 간격을 고려하는 것
- (c)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요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

3.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유엔, 기타 국제기구나 단체, 권역기구,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적신월회협회, 기타 비정부기구는 절차규칙에 따라 평가회의에 참관인으로 초청될 수 있다.

제13조 개정

1. 이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 당사국은 언제든지 협약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제안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이 제안을 모든 당사국들에게 회람한 뒤 이 제안을 고려하기 위한 개정회의 개최여부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유엔, 기타 국제기구나 단체, 권역기구,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적신월회협회, 기타 비정부기구는 절차규칙에 따라 개정회의에 참관인으로 초청될 수 있다.

3. 당사국 다수가 개정회의를 당사국회의 혹은 평가회의에 앞서 개최하자고 요청하지 않는 한 개정회의는 당사국회의 혹은 평가회의가 끝난 직후에 열린다.

4. 개정회의에 참석한 국가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에 개정제안이 통과된다. 수탁지는 개정안을 모든 국가에 통고한다.

5. 이 협약의 개정은 이 개정이 채택된 시점의 조약가입국 다수가 수락서를 기탁했을 때 이 개정을 수락한 당

사국들에 대하여 발효한다. 그 후에 이 개정내용은 남아있는 당사국들이 수락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해당 당사국에서 발효한다.

제14조 비용과 행정적 과제

1. 당사국회의와 평가회의, 개정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절히 조정된 유엔 산정 평가 기준(the United Nations scale of assessment)에 따라 각 당사국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는 비당사국이 부담한다.
2.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적절히 조정된 유엔 산정 평가 기준에 따라 각 당사국들이 부담한다.
3. 이 협약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이 맡아야 할 행정적 과제의 수행은 유엔의 권한(United Nations mandate)으로 위임된다.

제15조 서명

2008년 5월 30일 더블린에서 채택된 이 협약은 2008년 12월 3일 오슬로에서 조인식이 열릴 예정이고 이후 협약이 발효될 때까지 뉴욕 소재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제16조 비준, 수락, 승인 혹은 가입

1. 이 협약은 서명국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협약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에 가입이 개방된다.
3.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제17조 발효

1. 이 협약은 3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수탁자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6개월째 되는 달의 1일에 발효한다.
2. 본조 제1항에 설정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마지막 문서가 기탁된 후에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협약은 이러한 국가가 해당 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의 1일에 발효한다.

제18조 잠정적 적용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점에 해당 국가는 발효를 유보하면서 이 협약 제1조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제19조

이 협약은 유보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20조 기간과 철회

1. 이 협약은 무기한 존속한다.
2. 각 당사국은 주권행사의 과정에서 이 협약으로부터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해당국은 이러한 철회의 의사를 다른 모든 당사국과 수탁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철회서에는 철회의 배경이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3. 이와 같은 철회는 수탁자가 철회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뒤에 발효한다. 하지만 이 6개월이 만료되기 이전에 해당국이 무장 분쟁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국의 철회는 이 무장 분쟁이 끝난 이후에 발효한다.

제21조 비당사국과의 관계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모든 국가들이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목적 하에 비당사국들이 이 협약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2. 각 당사국은 조약의 의무를 본 조 제3항에 언급된 모든 비당사국에게 알려야 하고, 확립한 규범을 촉진하며, 비당사국이 집속탄의 사용을 단념토록 독려할 의무가 있다.
3. 그러나 당사국, 그 군대나 국민은 이 협약의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에게는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당사국과의 군사협력과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
4. 이 조항 제3항에 명시된 어떤 내용도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 (a) 집속탄의 개발, 생산 또는 여타 취득,
 - (b) 집속탄의 비축 또는 이송
 - (c) 집속탄의 사용
 - (d)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사용할 탄약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명시적으로 집속탄의 사용을 요청할 권한

제22조 수탁자

유엔사무총장이 이 협약의 수탁자가 된다.

제23조 정본

이 협약의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다.